

銀行機關의 國際化에 관한 研究

閥 相 基

《목 차》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우리나라 은행의 대외 진출
제 II 장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정의 및 은행거래의 유형	제 2 절 국내 점포에서의 은행기관의 국제화
제 1 절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정의	제 3 절 국외 점포에서의 은행기관의 국제화
제 2 절 은행거래의 유형	제 4 절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 특징
제 III 장 선진국 은행들의 국제화	제 V 장 결 론
제 1 절 은행기관의 국제화 일본	부록 : 은행의 해외 진출 및 업무에 대한 규제(한국)
제 2 절 미국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과 특징	
제 3 절 일본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과 특징	
제 IV 장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	

제 I 장 서 론

은행이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는 동기 즉,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동기는 크게 나누어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려는 수동적, 방어적 동기와 해외에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려는 능동적, 공격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예금 및 대출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여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은행은 이러한 기업들의 국제금융수요를 현지에서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수동적으로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게 된다. 만약 은행이 국제화를 자연스럽게 해외에 지점을 보다 먼저 설립한 은행에게 국내업무마저 빼앗길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국제화를 하는 것이 수동적 동기이다.

한편 국내에서의 은행산업은 과점경쟁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 과점적 시장구조이므로 특정은행이 시장점유율을 올리려고 가격 및 비가격경쟁을 시작하면 모든 은행들이 순간적으로 그 전략을 모방하여 결국 모든 은행들의 수익성만 떨어드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 때문에 시장의 성장잠재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이 공격적 동기의 은행의 국제화이다.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동기들은 무엇이며 현재 국제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또한 선진국 은행들은 어떠한 국제화의 경로를 밟아왔으며 이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은행들의 국제화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며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이다. 제Ⅱ장에서는 먼저 개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은행기관의 국제화에 대한 정의를 하고, 본고에서 제시한 개념적 틀과 여타 문헌들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적 틀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는 선진국 은행 즉 미국, 일본은행들의 국제화 과정을 분석하고,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화 과정,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 후, 제Ⅴ장에서는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Ⅱ장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정의 및 은행거래의 유형

제1절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정의

은행기관의 국제화에 대하여는 많은 자료와 이론이 있으나 불행하게도 은행기관의 국제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개념적 혼동이 일어날 때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은행기관의 국제화를 구조적 기준, 실적 기준, 거래유형 기준으로 나누어 은행기관의 국제화를 정의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¹⁾

1. 구조적 기준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정의에서 구조적 기준이란 해외사무소, 지점, 현지법인의 수에 의해 은행기관의 국제화 정도를 규정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기준은 그 자료를 구하기 쉽다는 편의성은 있지만 해외지점의 수가 얼마이어야 한다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국내에서 행하는 국제금융업무를 포함시킬 수 없

(1) 금융의 국제화를 파악할 때 국제화의 범주에 따라 시장의 자금이동(Money Flow)과 금융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각 진입(InFlow)과 진출(OutFlow)로 나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상품을 직접금융상품과 간접금융상품으로 나눈다면 8개의 색티가 만들어 진다. 여기에서 H 색티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은행기관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시장의 Money Flow		산업	
	InFlow	OutFlow	InFlow	OutFlow
직접금융상품	상장채권—주식시장의 개방, 해외 기재 A	국내거주자의 해외채권, 주식투자의 허용 B	증권산업의 개방 C	증권회사의 국제화 D
간접금융상품	차관, 해외거주자의 예금 E	해외대출 F	은행산업의 개방 G	은행의 국제화 H

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2. 실적기준

실적 기준이란 은행전체의 자산, 이익, 신장성에 국제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은행의 국제화정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도 국제업무에 해외지점의 업무만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행한 국제업무도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대외적으로 정기적인 공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료의 수집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기관의 국제화를 논의할 때 위에서 기술한 구조적 및 실적기준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계량적으로 국제화 정도의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은행이 국제화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기는 힘들지만 같은 나라의 다른 은행 또는 다른 나라의 은행들과 비교하여 국제화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할 때에는 이 기준들이 유용하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나타난 수치들은 결과치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제업무에 얼마만큼 진출되어 있는가, 또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국제업무에 전략적으로 진출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줄 수가 없다.

3. 거래유형기준

국제화에 관련하여 은행의 금융거래를 분류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국내, 국외), 고객(예금자, 차입자)의 거주성(거주자, 비거주자), 대출대상 거래(수출, 국내판매), 은행의 국적(국내은행, 외국은행) 및 거래하는 통화(자국통화, 외국통화) 등에 의해 국제화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다만 분류를 간단화하기 위해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장소, 고객의 거주성 및 거래하는 통화 등 3가지 기준으로 은행의 거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8가지 유형의 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은행거래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에 이러한 분류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금융의 분류방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 2절 은행거래의 유형

1. 은행거래의 유형화

이제 위에서 제시된 8가지 유형의 금융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국제금융업무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자.

① 제 1 유형 거래(국내점—거주자대상—원화금융거래)

국내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표시로 예금을 받고 또한 대

〈표 II-1〉 장소, 거주성, 통화에 따른 은행거래의 유형화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장소	고객의 거주성	거래하는 통화
제 1	유 형	국 내	거 주 자	원 화
제 2	유 형	국 내	거 주 자	외 화
제 3	유 형	국 내	비 거 주 자	원 화
제 4	유 형	국 내	비 거 주 자	외 화
제 5	유 형	국 외	거 주 자	원 화
제 6	유 형	국 외	거 주 자	외 화
제 7	유 형	국 외	비 거 주 자	원 화
제 8	유 형	국 외	비 거 주 자	외 화

출을 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내금융으로서 국제금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전통적 국내금융에도 국제금융과 관련된 것들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대출대상거래가 수출 또는 해외투자 등의 국제거래일 경우 대출이 국내통화로 이루어졌더라도 국제금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²⁾

둘째, 대출하는 은행이 외국의 은행일 때 국제금융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거래는 위의 분류에서 8가지 유형의 거래 중 우리나라의 은행이 진출한 국가에서 그 나라 거주자에게 그 나라 통화로 대출하는 것과 개념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류를 하지 않았다.

세째, 뒤에서 상술하겠으나, 해외진출의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과의 거래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화거래라 하더라도 주거래관계 등으로 은행—고객 관계를 공고히 해 놓는 것이 고객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장래고객으로서 확보될 가능성 을 높이는 첩경이다.

② 제 2 유형 거래(국내점—거주자대상—외화금융거래)

은행거래가 발생하는 장소(국내)와 거래되는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유로거래라고 하며 유로거래는 그 성격상 거래되는 장소의 금융당국이나 또는 거래되는 통화의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은행은 물론 외국은행들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거주자의 외화예금의 경우 최근에 외환환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무역 등의 실수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에 대해서만 거주자 외화예금이 가능하게

(2) Steven I. Davis, *The Management Function in International Banking*, John Wiley & Sons, New York, 1979.

되었으며 대출에 대해서는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③ 제 3 유형 거래(국내점—비거주자대상—원화금융거래)

비거주자가 원화표시로 예금을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원화가 국제화되어야만 가능한 거래이다.

제 3 유형의 거래는 국내에서 자국통화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금융당국의 통제대상이 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국통화거래를 하더라도 비거주자로부터 예금을 받아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Offshore 거래로 취급하여 지불준비율 및 조세면에서 유로거래에 상당하는 특혜를 주어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를 창설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는 자국통화의 거래가 자국의 금융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자국통화가 유로거래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 한하여 있는 제도이다.

④ 제 4 유형 거래(국내점—비거주자대상—외화금융거래)

제 2 유형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의 거래되는 통화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유로거래이며 또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Offshore 거래된다.

⑤ 제 5 유형 거래(국외점—거주자대상—원화금융거래)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로 진출하여 우리나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로 대출한다는 것은 아주 요원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현재는 해외에서 차입한 현지금융은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원화도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계 은행이나 일본계 은행의 경우 해외지점에서 국내거주자에게 유로달러 또는 유로엔을 대출하는 비중이 크다.

⑥ 제 6 유형 거래(국외점—거주자대상—외화금융거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표시로 대출하는 데에는 그 외화가 당해국 통화인가 아니면 제 3국 통화인가에 따라 성격이 틀리다.

⑦ 제 7 유형 거래(국외점—비거주자대상—원화금융거래)

이 거래 역시 제 3, 제 5 유형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원화국제화의 전제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로달러, 유로엔의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⑧ 제 8 유형 거래(국외점—비거주자대상—외화금융거래)

제 8 유형의 거래는 비거주자가 당해국의 거주자인가, 제 3국 거주자인가와 거래되는 외화통화가 당해국의 통화인가 아니면 제 3국 통화인가에 따라 다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 8-1 유형 거래

국외에서 당해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당해국 통화단위로 대출하는 것은 제 1 유형의 거래

〈표 II-2〉 국외—비거주자—외화거래일 경우의 세부 유형

거 대 통 화	거 대 상 자		거 주 자	
	당 해 국	제 3 국	당 해 국	제 3 국
통 화	당 해 국 제 3 국	8-1 유형 8-3 유형	8-2 유형 8-4 유형	

에서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이 한국에서 한국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표시로 대출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거래이다. 이 거래는 다시 거래대상이 개인인가 기업인가에 따라 소매은행업무와 도매은행업무로 나눌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현지의 은행에 비해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이 높아서 진입하기 힘들다. 따라서 외국은행들은 이러한 외국비용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독점적 우위를 가져야만 시장침투가 가능하다.

⑥ 8-2 유형 거래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제3국 거주자에게 현지국 통화로 대출하는 것은 8-1 유형의 거래보다도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단독 대출이 아니라 신디케이트론인 경우 신디케이트론의 한 멤버로서 참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⑦ 8-3 유형 거래

해외에서 당해국 거주자에게 현지국통화가 아닌 제3국 통화로 대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으나 여타 나라에서는 미국달러로 대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유로거래가 되므로 당해국의 통제가 일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사국의 외환, 자본자유화 정도에 따라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일본계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달러 표시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이 유형에 속한다.

⑧ 8-4 유형 거래

해외에서 제3국 거주자에게 현지국 통화가 아닌 통화표시로 대출을 하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경우에는 Offshore 유로금융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즉 한국의 은행 또는 일본의 은행의 런던지점에서 달러 표시로 헝가리의 기업에 대출을 하는 등의 경우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Offshore 유로금융의 대부분이 달러표시가 되므로 제7유형의 거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거래는 소매금융은 불가능하고 도매금융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분류들과의 비교

① 전통적 분류

은행기관(지점)의 장소에 따른 분류인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국내금융은 자국에서 자금

을 인수하고 대출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국제금융은 자국은행이 타국에서 직접 및 현지법인은행의 형태로 예금 및 대출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국제금융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제5, 6, 7, 8유형의 거래에 한정된다. 이는 단순 명확하나 국제업무를 염밀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장소와 통화에 의한 분류

전통적인 견해에 통화에 의한 분류를 가미시킨 분류이다. 이는 주요 통화에 고객효과⁽³⁾가 존재하여 본점을 둔 국가와 통화 사이와의 관계에서 자국통화로 표시된 예금과 대출활동을 행한 경우 국내은행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국제은행업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도 또한 모든 국제은행업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없다.

③ 예금자, 차입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은행의 예금자, 차입자의 국적에 따른 분류로 거래에 표시된 통화 혹은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에 관계없이 자국은행이 자국의 기업에 대출활동을 한다면 국내은행업으로 간주하고, 타국의 차입자에게 대출한다면 국제은행업으로 분류하는 주장이며, 이는 전통적 견해와 상반되는 면을 지니고 있다.

④ 유로금융과 Offshore 금융

유로금융이라 함은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와 거래통화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금융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화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그 통화가 범화가 아닌 나라에서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유로달러시장을 효시로 선진국은행들의 국제업무 신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무이다. 제2, 4, 5, 7유형의 거래와 제6, 8유형거래의 일부가 유로금융거래이다.

한편 Offshore 금융이란 Onshore 금융에 상대되는 단어로서 거래하는 고객 즉 예금자 및 차입자의 거주지와의 관계로 볼 때 내—내, 내—외, 외—내, 외—외 거래 등 네가지 유형의 거래가 발생한다.

이 중 외—외 거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Offshore 금융이 되며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의 금융당국에서도 성가풀과 같이 자국에 국제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 거래에 대해서만은 거주자가 개입되는 Onshore 거래와는 상이하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홍콩과 영국과 같이 Offshore, Onshore 구분없이 금융거래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국제금융시장으로 발전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Offshore 금융시장을 육성

(3) 예금의 소유자가 예금에 표시되는 특정국가의 통화를 보다 선호하며, 또 이러한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3〉 예금자, 차입자의 거주지에 따른 분류

차입자	예금자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내-내 내-외	외-내 외-외

하기 위하여 외-외 거래에 대하여 세계상의 혜택은 주고 있지만, 시간대의 불리함, 통신의 불편, 정치적 불안 및 원화의 교환성의 문제 때문에 아직 국제금융시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경, 홍콩, 싱가폴, 대만, 마닐라 등이 국제금융센타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여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라에서의 Offshore 거래는 거래되는 통화가 대부분 거래되는 장소의 법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로금융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게 되며 따라서 문현에서는 Offshore 금융과 유로금융을 혼동하여 표현할 때가 많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내에서 자국통화로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그 거래가 비거주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외 거래일 경우에는 세계상의 혜택을 주는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Offshore 금융과 유로금융은 개념상 엄연한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된 8가지 유형분류에서는 예금자와 차입자의 거주성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Offshore와 Onshore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다만 제3, 4, 5, 6유형의 거래에 있어 예금 및 대출이 비거주자 사이에서 일어날 때 Offshore 거래가 된다.

⑤ 국제결제은행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분류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은행의 내외에 있어서의 활동을 거래되는 자신의 통화, 은행(본점)의 소재지 및 은행의 고객(예금자 및 차입자)의 거주지의 세 측면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4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1) 협의의 국내금융 : 통화표시=은행의 소재지=은행 고객의 거주지
- (2) 협의의 대외금융 : 통화표시=은행의 소재지 ≠ 은행 고객의 거주지
- (3) 유로 국내금융 : 통화표시 ≠ 은행의 소재지=은행 고객의 거주지
- (4) 유로 대외금융 : 통화표시 ≠ 은행의 소재지 ≠ 은행 고객의 거주지

유로 대외금융은 Offshore 금융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로 〈통화표시=은행 고객의 거주지〉가 성립하는 경우는 Offshore 국내금융이라 부르며 소위 수용국금융(Host Country Banking)으로 지칭한다.

이 분류는 본고의 분류와 그 기준이 거의 같으나 은행의 소재지기준을 은행의 지점의 소

재지기준이 아니라 은행 본점의 소재지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가령 일본계 은행의 런던지점이 런던에서 파운드로 영국기업에게 대출을 한 경우 은행지점의 소재지기준으로 보면 국내금융이 되나 은행본점의 소재지기준으로 보면 유로대외금융이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유로라는 개념은 거래되는 장소의 법화와 거래되는 통화가 틀리다는 의미일뿐 거래하는 은행이 외국은행의 지점이든 국내은행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비록 일본계 은행의 런던지점의 본점이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가 런던인 이상 위의 거래는 유로거래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은행의 소재지 기준은 마땅히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의 기준으로 바꿔야 옳을 것으로 본다.

국제결제은행의 분류는 통화표시와 은행고객의 거주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유형의 분류를 유로 대외금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고 있어 유형이 단순화되어 있다. 즉 협의의 국내금융은 본고 분류의 제 1유형, 제8-1유형과 일치하며(은행의 소재지를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로 해석할 때), 협의의 대외금융은 제 3, 제 6의 일부, 제8-2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 유로국내금융은 제 2, 제 7의 일부, 제8-3유형의 거래와 내용이 같으며, 유로대외금융은 제 4, 5, 제 6, 7의 일부, 제8-4유형의 거래와 동일하다.

한편 때라니시는 국제결제은행의 분류를 다시 정리하여 국내금융, 대외금융, 유로금융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text{국내금융} = \text{협의의 국내금융} + \text{유로 국내금융}$$

$$\text{대외금융} = \text{협의의 대외금융} + \text{유로 대외금융}$$

$$\text{유로금융} = \text{유로 국내금융} + \text{유로 대외금융}$$

의 형식으로 집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 Ⅲ장 선진국 은행들의 국제화

이 절에서는 먼저 은행기관의 국제화 이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선진국 은행들 중 현재 가장 국제화가 많이 이루어진 미국계 은행들과 일본계 은행들의 국제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절 은행기관의 국제화 이론

1. Steven I. Davis의 국제화 이론⁽⁴⁾

(4) Steven I. Davis, *The Management Function in International Banking*, N.Y. John Wiley & Sons, 1979.

Davis는 은행이 국제화를 할 때는 국내금융(National Banking), 국제금융(International Banking), 세계금융(Global Banking)의 3단계를 거치며 세계금융은 다시 세계도내금융과 세계소매금융의 하부단계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판매의 영업을 하다가 수출을 하고 이후 현지생산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 진다는 제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이론을 그대로 금융서비스 부분에 적용시킨 경우라 할 것이다.⁽⁵⁾

각 단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1 단계는 국내금융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국내고객의 수요에 수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을 주요 업무로 하며, 해외활동은 환거래계약을 맺은 코레스은행을 통하여 수행하고, 주요 수입원은 무역신용에 관련된 서비스 즉 신용장개설, 대금추심, 외환매매 등에 대한 외환매매수수료로서 전체 이익에 있어 국제금융업무의 이익의 비중은 미미한 경우이다.

제 2 단계는 국제금융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국제업무가 대폭 확장된다. 고객의 수요에 대한 업무개발에 주력하고, 현지법인이나 해외직접의 설치를 통해 해외활동의 거점을 확대하며, 해외로부터의 차입 및 해외로의 대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고객의 범위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해외현지기업까지 확대되고, 해외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이 점차 증가된다.

제 3 단계는 세계금융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마천트뱅킹, 리스, 팩토링 등 주변업무의 확대로 국제금융업무에 주력하고, 대고객활동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간 거래에 적극 참여하여 자금거래 및 서비스제공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며, 세계적인 점포망을 이용한 금융활동으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수익이 국내부문의 수익을 상회하게 된다. 그리고 특정지역 활동에서 벗어나 전세계를 포괄하는 국제적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종래의 국제업무 이외에 고도의 정예화된 소수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유로예금의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게 되며, 국제대부는 종래의 운용자금 성격의 단기대부에서 점차 중장기화하게 됨으로써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출위험과 국별대출위험도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앞에서 제시한 은행거래의 8유형과 연관하여 설명해 보면 국내금융은 국내수출입기업을 중심으로 무역신용이 주업무로서 본고의 은행거래유형으로 볼 때는 제 1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며, 국제금융은 국제기업이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현지에서의 금융수요가 늘

(5) Steven I. Davis는 은행기관의 국제화 단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비율을 지표로 삼았다.

게 되어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은행들은 수동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으로서 제5 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세계소매금융은 주로 유로시장에서 은행간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제3국의 고객에게 신디케이트 루나 형식으로 대출하는 것으로서 제7, 제8 유형의 거래가 주업무이고, 법세계소매금융은 진출한 현지국의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것으로서 8-1 유형의 거래가 가장 전형적인 거래형태가 된다.

이와 같이 Davis가 제시한 은행기관의 국제화 발전단계는 자국통화가 세계자본거래의 표시통화인 미국계 상업은행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로 대출하는 제2, 제4, 제6 유형의 거래들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자국은행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은행들이었으므로 제5 유형의 거래에서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외국지점들의 현지금융수요를 거의 독점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은행기관의 국제화를 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자금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보다 은행이 먼저 해외에 진출하였다는 점과 진출의 성격상으로서도 Steven I. Davis가 마지막으로 제시하였던 국제소매금융으로의 진출이 제2 단계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표 III-1〉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⁶⁾

은행기관의 국제화 단계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국내금융 (national banking)	국제금융 (international banking)	제 3 단계(협의) (international full service banking)	제 4 단계 (world full service banking)
기업의 국제화 단계	수출입 중심	해외직접투자의 본격화	다국적 기업화	
은행이 취급하는 국제업무	무역거래에 직면되는 외국화업무는 중심으로 한 차본거래는 단기금융에 한함	투융자의 비중이 높아짐 차본거래도 중장기의 비중이 높아짐	〈머천트 뱅킹〉 〈리스〉 〈콘설팅〉 등 각종 은행 주변 업무와 그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	소매은행업무는 취급치 않음 소매은행업무를 취급함
은행의 국제업무 수행방법	외국은행과의 코레스 계약체결	직접 해외거점을 강화	자체의 해외거점을 물론 차본참가, 일부재투, 주변업무, 자회사설립 등 가장 유리한 형태를 취함	
은행의 국제업무거래선	자국기업중심	자국기업중심	다국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6) 이찬구, 「국제금융론」, 예코노미아, 1984.

수 있다.

2. Herbert G. Grubel의 국제화 이론⁽⁷⁾

Herbert G. Grubel은 1960년대와 70년대 은행이 해외로 진출하는 현상을 외국진출은행이 현지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설명하는데 있어서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이론을 차용하여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이점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원천인 우위요소를 중심으로 은행의 금융업무의 국제화를 다국적 소매은행 (Multinational Retail Banking), 다국적 서비스은행 (Multinational Service Banking), 다국적 도매은행 (Multinational Wholesale Banking)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⁸⁾

네용별로 살펴보면 다국적 소매은행은 해외직접투자이론과 같이 국내시장을 상대로 개발된 정영기법이나 마아케팅 노하우 등을 낮은 한계비용으로 해외에서 이용함으로써 현지은행에 비해 경쟁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제품차별화, 광고, 지점선정, 사무자동화 등은 현지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소매금융기법이다. 이는 현지은행들에 의해 쉽게 모방되어 경쟁적 우위를 상실하기 쉬우므로 전적으로 소매금융에만 의존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다국적 서비스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기업의 해외에서의 은행서비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은행도 해외진출활동을 하며, 진출은행들은 해외자회사의 모기업과 오랜 유대관계로 그 기업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낮은 비용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지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고, 자국기업체의 해외자회사와 업무상의 유대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어적 조치를 갖는다. 이는 선진 국가의 은행들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과 밀 맞추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다국적 도매은행은 국제간의 자본이동에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유로커런시 시장에서의 거액의 자금재정거래를 통한 금융활동으로서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한 해외직접 등을 통해 자금조달, 투자 및 정보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로시장에서의 활동은 국내금융시장에서의 활동에 비해 여러가지 금융규제로부터 면제되어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등이 해외진출에 큰 요인이 된다.

Herbert G. Grubel의 국제화 이론은 은행의 해외로의 진출요인 및 현지시장에서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요인을 설명해 주고, 은행의 국제금융활동 특성에 따라 도—

(7) Grubel, Herbert G., "A Theory of Multinational Banking", *Banca Nazional del Lavoro Quarterly Review*, 1977.

(8) Herbert G. Grubel의 국제화 이론을 Steven I. Davis의 국제화 이론의 각 단계와 접목시켜 본다면 다국적 소매은행은 범세계소매금융과, 다국적 서비스은행은 국제금융과, 다국적 도매은행은 범세계도매금융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소매 금융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는 한가지 특성에 특화함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점차 사라지 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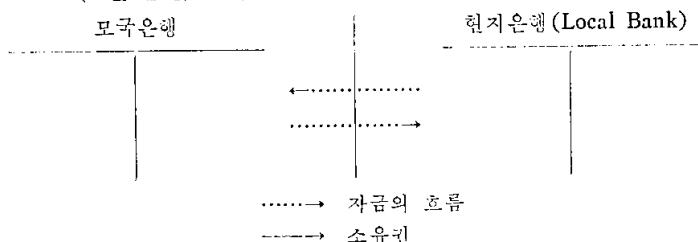
3. Ian Giddy의 국제화 이론⁽⁹⁾

Ian Giddy는 은행의 국제화 현상을 입지 (Location), 성과 (Performance), 시장형태 (Type of Market)의 세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본국중심국제금융 (Arm's Length International Banking), 역외금융 (Offshore Banking), 수용국중심국제금융 (Host Country Banking)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을 빌어 국제금융현상을 설명하면서 본국중심국제금융은 국제무역에, 역외금융은 저임금 국가에 설립한 조리공장에, 그리고 수용국중심의 국제금융은 본격적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국중심국제금융은 본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장 단순한 유형의 국제금융으로 주로 외국인에 대한 수신 및 여신활동과 코레스은행의 구좌를 통한 자금결제를 행한다. 또한 다국적 은행의 최소한의 형태로 외국인으로부터 예금을, 외국인에 대해 대출을 하며, 국제거래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은행과 코레스거래를 행한다. 각국의 규제로 인해 국제금융활동은 해외진출의 형태를 통해 타국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의 차이, 독점적 우위, 국제 자금거래에 대한 장벽,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모든 규제장벽이 제거되고 시장원리에 따라 완전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면 모든 은행의 국제금융활동은 이 유형의 성격을 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은행이 외국으로부터 예금자나, 차입자를 가질 경우를 나타내는 아래의 〈그림 III-1〉을 보면 본국중심국제금융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역외금융은 역외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유로카먼시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신디케이트 대출, 은행간 거래 등의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며 여기에서의 낮은 코스트의 중요한 원천은 다른 규제 즉 offshore 입지에서의 낮은 규제에 근거한다. 즉 고객이 동일할 경우 은행은 국내

〈그림 III-1〉 외국으로부터 예금자나, 차입자를 가질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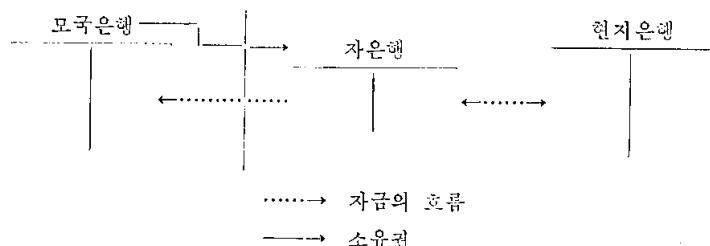
(9) Giddy, Ian H. (1981), (1982).

〈표 III-2〉 Giddy의 온행기관의 국제화 과정

	본국 해외 은행업	해외 은행법	투자 대상국 중심 은행업
(1) 설 행 조 건	자금의 해외 유출과 국내 유출에 아무런 규제상의 또는 정보상의 장애가 존 재치 않음; 국가간의 규제 정도에 차 이가 없음.	자금의 이동이 자유로이 허용됨; 국가간의 규제 차이가 존 재함.	자금의 이동에 제약이 주 어짐; 외국 은행의 진입 및 활 동이 선별적으로 제약 됨.
(2) 주요업무 내용	로레스 거래 활동, 해외 대출 및 차입, 지불 결제, 수출 금융.	적극적인 거액의 단기자 금 매입 및 모집, 신디 케이트대출, 은행 간 유 로 통화 및 외환 거래.	지역 통화 차입 및 대출, 유로 통화 대출.
(3) 주 고객	수입 업자, 수출 업자, 투 자기, 외국 은행.	주로 유로 시장 센터 이외 의 예금주 및 차입자.	지역 내의 예금주 및 차 입자, 지역 은행
(4) 시장 구조	국내적으로 경쟁이 발 생; 각 은행은 탄력성이 높 은 수요곡선 현상에 직 면하게 됨.	국내적으로 또한 국제적 으로 경쟁이 발생; 각 은행은 대단히 탄력 성이 높은 수요곡선 현 상에 직면하게 됨.	은행 점중도가 높고 경쟁 은 높지 않음; 은행은 비탄력적 수요곡 선에 적변하게 됨; 가격과 수량 면에서 혼 히 규제를 받게 됨.
(5) 국제 무역 현상 에의 미 유	국제 무역	저임국 간에 설립한 조 립 공장.	본격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의 신용분석기법을 손쉽게 해외에서도 행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국내은행도 이러한 잇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출하게 된다. 이 때 은행은 고도의 심사기법, 광범위한 거래관계의 형성 및 마아케팅상의 노하우 등의 우위요소의 기반을 활동하며, 현지에로의 이전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국내시장에서와 같은 정체적 규제가 없는 유로시장에서 최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은행의 상표 또는 상호와 결합되어 그 은행 특유의 성격을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독점적 우위와 유사한 개념이다. 현재 시장진입의 자유로움 때문에 높은 경쟁에 적면하게 되나 역외금융시장에서의 제도적인 우대조치로 많은 은행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부채와 이에 상응하는 자산이 국내통화로 표시되나 외국에서 기장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그림 III-2>를 보면 역외금융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I-2〉 부채와 이에 상응하는 자산이 국내통화로 표시되나 외국에서 기장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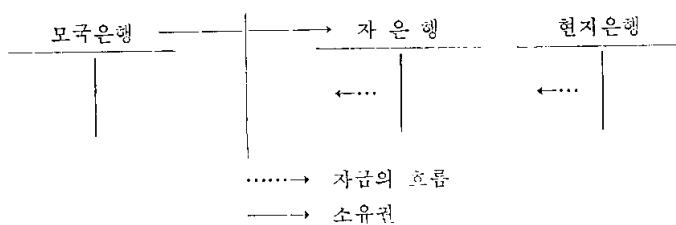
진출국 중심 금융 활동은 해외 시장으로의 직접적인 진출을 통해 그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금융 활동 즉 외국은행이 다른 국가에 Local Business(대출자 또는 지역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고자)를 위하여 진출함을 의미한다. 이의 우위요소는 기본적으로 역외금융의 경우와 별차이가 없다. 유로카런시 시장에서는 높은 경쟁으로 인하여 각 은행은 수령의 수요곡선을 갖는다고 가정되나 수용국 은행업(Host country banking)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강하는 수요곡선을 만나게 된다. 유로뱅킹 대신에 국내은행이 선호된다면 그것은 유로뱅킹에 대해 인식된 위험이나 코스트가 높거나, 정보비용이 크거나, 예금이나 차입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이다. 외국은행의 효율성과 기존의 생산자 잉여를 소비자 잉여로 가져가게 되는 외국은행의 진입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통화와 거래지역은 고객과 같으나 은행의 국적만이 다를 경우를 나타내는 <그림 III-3>을 보면 역외금융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특성과 다국적 은행의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I-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Ian Giddy의 국제화 이론은 현재 국제금융에 참여하는 은행의 활동을 모두 설명하고 있고, 각 은행은 본국에서의 활동과 역외금융시장 및 진출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해외진출을 통한 활동을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가지 활동중 어느 유형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국제금융활동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Ⅲ-3〉 통화와 거래지역은 고객과 같으나 은행의 국적만이 다를 경우



〈표 Ⅲ-3〉 국가의 특성과 다국적 은행의 형태

국가의 특성	원천 국가	오프쇼워센터	호스트국가
① 큰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예		
② 광의로 정의된 부채에 대한 중앙은행 준비금 비용	높음		높음
③ 국내은행에 대한 규제의 비용	높음	낮음	높음
④ 다국적 은행에 대한 규제의 비용	낮음	낮음	보통높음
⑤ 외국은행의 진입과 영업에 대한 규제	낮음	낮음	가끔낮음
⑥ 외국으로의 자금흐름에 대한 규제	낮음	낮음	높음

이를 앞에서 제시한 은행거래의 8유형과 연관하여 설명해 보면 본국중심국제금융은 국내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통화표시의 여수신은 국제금융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분류의 제2, 3, 4 유형거래를 전부 포함하게 된다. 역외금융은 그 정의로 보면 거래되는 장소와 거래되는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금융을 뜻하지만 Giddy가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면 Davis의 법세계도매금융과 내용이 동일하고 또한 수용국중심국제금융은 법세계소매금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기타 이론

① 시장불완전성 및 정부의 규제적 접근이론

Caves는 은행의 국제화를 60년대 말과 70년대 전기간에 걸쳐서 유럽 특히 영국에 지점만을 설립한 미국계 은행의 신장요인으로 설명하였으며, Gray & Gray는 더닝의 질충이론을 적용하여 다국적 은행이 적용된 다국적 기업의 유인요소를 생산물시장의 불완전성, 요소시장의 불완전성, 내부경영의 유기적 조직, 기존고객계좌의 보존, 성장시장에의 참여, 원자재 공급원에 대한 확보로 설명을 하다가 이보다 법적인 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한다는 도피동기론을 제시(Escape Motivation)하였다. Giddy는 은행의 국제화가 시장의 불완전성, 규제의 형태, 방해 및 진입장벽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으며, Noihans는 정보시장에 종점을 주어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은행 내부에서의 정보흐름은 은행간의 정보흐름보다 훨씬 용이하므로 정보시장의 불완전성의 견지에서 다국적 기업이 다국적 은행의 동기화를 창출하며 해외지점망을 구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정치적 위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Lees의 선도—추종 관계적 접근이론

Lees는 대규모 자금자원과 인력을 가진 거대한 미국계 은행들은 소규모 토착은행에 의해 서 제공되어지지 못할 은행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③ Khoury의 자본선택적 접근이론

Khoury는 국제포트폴리오 이론을 은행의 국제화 동인에 원용하여 총자산(해외자산+국내자산)의 위험은 엄밀한 국내자산위험보다 낮다는 것을 실증(포트폴리오 효과)으로 제시하여 은행의 국제화는 소유 자본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④ Aliber의 산업조직론적 접근 및 국제무역론적 접근이론

Aliber의 두가지 접근방법은 국가별 은행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산업조직론적 접근방법은 수신금리와 여신금리의 예대금리차, 국제무역이론적 접근방법은 각 국가별로 금융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차이를 내게하는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⑤ 확산론적 접근이론

확산이론적 접근에 의하면 은행 국제화는 초기에는 유사환경지를 중심으로 하며, 금융기관은 경우 교포가 많거나 본국기업의 현지투자가 많은 지역중심으로 다국적 서비스금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은행이 해외교포가 많은 지역이 해외 금융거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소매은행업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당히 부합되는 내용이다.

⑥ 경쟁우위론적 접근이론

경쟁우위이론적 접근은 총비용우위 (Overall Cost Leadership), 차별화 (Differentiation), 집중화 (Focus)로 은행 국제화를 설명하고 있다. 총비용우위는 금융기관의 규모, 네트워크의 넓이화 효율성, 금융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저렴한 자금조달원천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이며, 도매업자, 외환거래, 국제결제서비스에서 크게 나타난다. 차별화는 금융서비스의 차별화 능력을 의미하며 금리, 수수료, 부대조건 등의 객관적 차별화이며, 이는 R&D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시장 및 고객에 대한 축적된 정보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는데에서 비롯되며 금융서비스의 특성인 한정성, 모방용역성으로 인해 전유적 통제권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집중화는 특정 제화나 용역 또는 특정 시장을 목표로 전문화하는 한정시장 공격전략을 의미한다.

⑦ Odle의 생산양식론적 접근이론

Odle의 생산양식론적 접근은 선진국 은행들이 후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논리적 쟁점을 맞추고 있다.

제 2 절 미국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과 특징

1. 미국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

미국계 은행들의 국제화가 시작된 시점은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이었다. 미국달러가 국제무역에 표시통화로서의 위치가 올라가고 또한 미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계 은행들은 처음으로 해외에 지점 및 현지법인들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당시 해외지점의 제일 중요한 업무는 라틴아메리카에 상품원료생산에 투자를 시작한 미국기업에 대한 금융제공이었다. 1916년 말 26개에 지나지 않던 해외지점의 수가 1920년 말에는 181개로 급증하게 된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상품원료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진출기업에 대한 융자가 부실하게 되었고 미국계 은행들의 해외지점의 수도 1926년에는 107개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미국계 은행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려 그 당시 가장 신용도가 높다고 판단되

〈표 III-4〉 미국계 은행의 해외 진출 추이

분류	년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4
A : 해외지점 소유은행 수		8	13	79	126	159	163
B : 해외지점 수		124	211	532	762	799	905
C : 미국계 은행 해외지점의 총자산(\$ Billions)	n.a.	8.9	46.5	176.5	397.5	452.2	
D : 미국계 은행의 총자산(\$ Billions)	257.6	377.3	576.2	965.2	1,703.7	2,262.6	
C/D	n.a.	2.4%	8.1%	18.3%	23.3%	20.0%	

자료 :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Banking and Monetary Statistics.

Federal Reserve Bulletin.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는 독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 1931년 은행위기가 낙쳐와서 독일은행들이 지불불능을 선언할 시점에서는 90여개의 미국계 은행들이 해외자산의 40% 이상을 독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2차대전 중 및 그 직후의 기간 동안에는 미국계 은행들의 국제화는 동면기에 있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즉 1960년의 해외지점의 수는 124개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70년에는 532개로, 1980년에는 799개로 급증한 것이다(〈표 III-4〉 참조). 1960년대에 들어와 미국계 은행들의 해외진출이 급증한 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는 1958년 로마조약에 의해 유럽공동체가 탄생함에 따라 관세장벽을 넘기 위해 미국기업들이 대거 유럽에 직접투자를 했으며 미국계 은행들은 이러한 자국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해외진출을 서두른 것이다. 둘째는 1950년대 말부터 커지기 시작한 유로달러시장으로의 진출이다. 유로달러시장이 탄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으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유로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증권비용이 적게들며 자금대출에 정부의 간섭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1964년부터 국제수지적자문제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은행들의 해외대출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자 은행들은 이미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해외로 진출했다. 1966년 미국 국내에서 긴축금융정책을 펼쳤을 때 은행들은 유로시장에 진출해 있는 해외지점들을 통하여 달리자금을 미국으로 유입하는 등 해외지점을 자금의 창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제1차 석유파동이 있은 후 미국내의 경기는 급격히 냉각되어 국내에 대출할 기회가 준 반면 비산유국들이 유가상승으로 야기된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산유국들의 금융수요가 뚜렷함에 따라 미국계 은행들은 유로달러시장에서 오

일 달러 중계업무를 넓혔다. 갑자기 오일머니를 많이 가지게 된 아랍계 국가들은 일부는 산업구조 조정에 사용하기는 했으나 자금소화능력(Capital Absorption Capacity)에 한계가 있어 유로 시장에 예금을 했으며 1974년 독일의 Herstatt 은행이 부도가 남에 따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신인도가 높은 미국계 은행으로 예금이 집중되었고 미국계 은행의 해외지점들이 오일머니 중계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당시부터 비산유개도국으로의 대출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업무를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계 은행들은 비산유개도국에도 지점을 개설하기 시작하여 현지에서 외화대출을 하는 업무에도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1979년 제 2 차 석유파동 후에도 미국계 은행들은 오일머니 중개에 큰 역할을 했으나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제 1 차 석유파동 후와 차이가 있었다. 첫째, 제 2 차 석유파동은 석유 가격을 올리는 데 일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관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제 2 차 석유파동 후 산유개도국인 멕시코에 집중적으로 대출한 것들이 1982년 석유가가 하락하자 부실이 되어 버렸다. 또한 멕시코가 지불연기를 하자 비산유개도국인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도 지불연기를 선언하여 유로달러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아 유로달러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시장의 확장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둘째, 제 2 차 석유파동 후에는 일본이 경제조정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일머니가 미국계 은행으로만 쏠리지 않고 일본계 은행으로도 배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후 1985년까지 미국이 달러강세를 유지하는 동안 일본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주역으로 대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급기야 1985년 말 시점부터 일본계 은행들의 해외자산이 미국계 은행들의 해외자산을 능가하기 시작했다.⁽¹⁰⁾

1980년 중반 유로시장에서 은행의 중계업무가 침체됨에 따라 유로시장에서는 증권화현상이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계 은행들은 해외지점에서 증권업무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2. 미국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특징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살펴 본 미국계 은행들의 국제화 과정에서 그 특징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계 은행들의 국제화가 시작되던 1920년대에 이미 미국달러는 국제거래의 표시통화로서 그 위치가 확립되었다. 이는 미국계 은행들의 국제화에 커다란 우위요소로 작용하였다.

(10)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1988. 6.

둘째, 미국계 은행들의 국제화 과정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Davis가 말하는 발전 단계를 그대로 밟고 있다. 즉, 초기 단계에서 국내지점이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업무를 시작하다가 미국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게 됨에 따라 1960년대 초부터 해외지점을 설치하여 국제금융업무를 넓혔으며 1970년대부터 유로시장에서 신디케이트론을 중심으로 범세계도매은행업무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소매은행업무에 진출을 하고 있어서 8개 유형 모두에 걸쳐서 고르게 국제화가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세째, 미국계 은행은 해외진출을 할 시점에 자금력이나 경영능력이나 또는 지명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큰 상태에 있었다.

네째, 미국계 은행기관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에 대한 금융당국통제의 비대칭성이었다. 1929년 공황을 겪고난 후 미국은 국내금융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였다. Glass-Steagal Act에 의한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분리, McFadden Act에 의한 州間거래의 금지, Regulation Q에 의한 예금이자상한,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대한 보증료 징수 등으로 업무영역, 업무장소 및 중개비용상에 제약이 많았을 뿐 아니라 1964년부터는 해외고객에 대한 대출마저 제한을 한 반면 미국계 은행들의 해외영업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계 은행들은 국내의 제약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을 서두르게 되었다.

다섯째, 미국계 은행들의 국제업무 진출은 진출하는 장소, 진출하는 업무 및 진출하는 시점에 있어서 초기 진출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Bandwagon Effect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국내외에서 과점적 산업구조에서 경쟁하는 은행의 경우 당연한 기업행동방식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여섯째, 1970년대에는 국내경기가 대단히 나빠서 국내기업의 부도율이 높아 국제업무에서의 부실율이 국내업무의 부실율보다 낮다고 한 보고서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191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대출이나, 1920년대 독일대출이나 1970년대 개발도상국 대출에서의 부실율은 매우 높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Bandwagon Effect의 비용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미국의 은행들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이며 후진국 정부에서 대출을 한 것이 부실이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정부가 IMF, IBRD 등 국제기구를 통해 대신 압력을 가해준다든지 또는 미국정부가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부실이 된 국가에게 차관을 해준다든지 하여 미국의 은행들을 보호해 주는 경우도 많아서 국제금융에 따른 위험을 경감시켜 주었다.

제 3절 일본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과 특징

1. 일본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

일본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은 크게 나누어 1945년 이전까지의 제 1 단계, 1970년까지의 제 2 단계, 1980년까지의 제 3 단계, 1980년 이후의 제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 단계 은행기관의 국제화에 있어서 일본계 외국환은행은 2차대전 전에만 해도 재벌 많은 지점을 가지고 외국은행과 대등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일본 국내은행의 최초 해외지점으로 1878년 국립 제일은행(현재 제일권업은행)의 부산지점이 개설되었는데 이어서 1880년 횡병정금은행(현재 동경은행)이 런던, 파리, 뉴욕, 샌프란시스코, 상하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대장성의 보관적인 인가를 받았다. 이에 의해 1881년에 횡병정금은행은 런던에 출장소를 개설하였다. 그 후 일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눈부시게 행하여져서 1926년에는 74개 지점, 17개 출장소, 1942년에는 79개 지점, 72개 출장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945년의 패전에 의해서 일본 국내은행은 모든 해외거점을 잃게 되었다.

제 2 단계 일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강화조약의 발효 후인 1952년에 다시 시작되어 그 해의 거점 설치는 5개 은행에 의한 6개 지점으로 뉴욕과 런던에 각 3개 점포씩 개설하였지만 그 후 현지법인의 설립과 주재사무소의 개설을 포함한 해외진출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 및 자본 통제가 엄격하여 이 시기에 있어서 일본계 은행들의 국제금융업무는 주로 무역금융의 제공으로 제한되었다. 1972년까지 일본에서는 무역금융은 외국환은행들이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한 무역금융에 대해 일본은행과 외국은행, 특히 미국계 은행들로부터 재할인을 제도적으로 받

〈표 III-6〉 일본·해외은행 상호진출사항(연도별) (1988년 12월 말 현재)

	50~55	56~65	66~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75~85	현재수	
일본은행	해외지점	13	34	54	6	11	4	5	12	12	8	9	10	13	90	191
	현지법인	3	2	37	7	7	10	1	8	7	14	15	16	33	118	155
	주재원사무소	4	14	125	23	12	16	22	24	23	55	42	34	63	314	370
	합계	21	53	227	36	30	30	28	47	44	80	68	62	109	522	716
외국은행	해외지점	35	4	44	4	6	3	4	1	9	7	4	5	9	52	114
	현지법인													3	3	3
	주재원사무소		7	95	6	7	9	7	8	8	17	11	9	17	98	116
	합계	35	11	139	10	13	12	11	9	17	24	15	14	29	153	233

자료 : 대장성, 「국제금융국 연보」

주 1) 본표의 「현지법인」이란 출자비율 50%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함

주 2) 현재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폐지·통합에 의한 것임

주 3) 개설 기준

았다는 점이 미국계 은행들이 무역금융을 B/A 시장을 근거로 제공하던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외환전문은행법에 의해 동경은행에게 해외진출의 우선권이 주어졌으며 여타 도시은행들은 뉴욕과 런던에만 한정적으로 지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1955년 시점에 동경은행은 7개의 해외지점을 가진데 반하여 12개의 도시은행 중 5개의 은행만이 총합계 8개의 해외지점을 가졌다. 1970년 시점에 동경은행의 해외지점은 28개로 크게 늘었으며 도시은행들의 해외지점들의 수도 30개로 늘었지만 여전히 해외업무는 동경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제1차 석유파동 때문에 약간의 단절은 있었지만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은행들도 해외진출을 서두르게 되었다. 1970년에 일본 국내은행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진 국제투자은행이 런던에 설립된 것을 계기로 그 후

〈표 III-7〉 일본·해외은행 상호진출사황(국별) (1988년 12월 말 현재)

지 역	국 명	국내외국환은행의 해외진출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은행)	지 점	현지법인	주재원 사무소	계	(은행)	지 점	주재원 사무소	계
북 미	미 국	(26)	68	19	50	137	(21)	32	17	49
	캐 나 다	(7)	—	7	18	25	(5)	5	—	5
	멕 시 코	—	—	—	17	17	—	—	4	4
	브 라 질	(3)	—	3	19	22	(2)	2	1	3
	파 나 마	(7)	6	4	3	13	—	—	—	—
중남미	아 르 헨 디 나	(1)	1	—	5	6	—	—	1	1
	기 타	(1)	2	—	6	8	—	—	1	1
	영 국	(23)	23	16	16	55	(5)	8	14	22
	이 탈 리 아	(3)	2	2	1	5	(2)	2	4	6
	오 스 트 리 아	—	—	—	2	2	—	—	1	1
구 주	네 델 랜 드	(4)	—	4	1	5	(3)	6	2	8
	프 랑 스	(3)	3	1	11	15	(7)	17	7	19
	벨 기 애	(12)	5	7	—	12	(1)	1	2	3
	룩 셈 부 르 크	(5)	—	5	—	5	—	—	2	2
	서 독	(11)	13	3	15	31	(6)	7	7	14
중근동	스 위 스	(17)	—	18	10	28	(3)	3	10	13
	스 폐 인	(2)	3	—	9	12	(1)	1	5	6
	포 루 루 칼	—	—	—	1	1	—	—	—	—
	기 타	—	—	—	3	3	—	—	10	10
	레 바 논	—	—	—	2	2	—	—	—	—
아 이	이 란 트	—	—	—	5	5	—	—	1	1
	이 접 트	—	—	—	2	2	—	—	—	—
	마 배 인	(2)	1	1	16	18	—	—	—	—
기	마 대	—	—	—	1	1	—	—	2	2

아시아	파 키 스 탄	(1)	1	-	-	1	(1)	1	-	1
인	도	(2)	4	-	1	5	(2)	4	-	4
		(1)	-	-	1	-	-	-	-	-
말 래 이 지 아		(1)	1	-	13	14	(1)	1	-	1
싱 가 포 르		(20)	20	17	3	40	(4)	8	2	10
인 도 네 시 아		(3)	1	2	14	17	(1)	1	1	2
타 이		(2)	2	-	10	12	(1)	2	2	4
대 만		(1)	1	-	-	1	-	-	-	-
홍 콩(홍 콩)		(23)	18	25	11	54	(2)	6	2	8
(마카오)		(1)	1	-	-	1	-	-	-	-
필 리 편		(1)	1	-	6	7	-	-	3	3
한 국		(8)	9	-	7	16	(6)	9	9	18
중 국		-	-	-	55	55	-	-	-	-
기 다		-	-	-	-	-	-	-	-	-
대 양 주 호 주		(11)	-	12	33	45	(3)	3	3	6
뉴 질 랜 드		-	-	-	1	1	-	-	2	2
기 타 (캐 이 만 등)		(9)	4	9	3	16	-	-	-	-
합 계		(28)	191	155	370	716	(77)	114	116	230

자료 : 대장성, 「국제금융국연보」

주 1) 개설 기준

주 2) 「(은행)」란은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 은행수

일본 국내은행의 출자는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그 내용과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첫째, 일본의 국제수지 개선, 외환보유고의 증대를 배경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1970년 초반부터 활발해져서 일본 국내은행으로서도 이들 해외진출기업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 : 유로시장에서의 중장기 금융) 둘째, 지점형태로서의 해외진출이 현지 규제에 의해 불가능해지고 또는 업무제한 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법인의 형식을 취하였다. (예 :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 브라질) 세째, 국제금융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구미 은행들의 노우하우를 흡수하기 위하여 합작의 형태를 취하였다. (예 : 런던에 있어서 미칠토 뱅크와의 증권인수회사 합작 설립) 세째, 진출국 현지은행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하여 출자참가를 하였다. (예 : 홍콩, 이란)

외환전문은행인 동경은행은 이미 어느 정도의 세계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까지 10년동안 5개만 증가하는 등 더 이상의 확대가 극히 미미했던 데 반하여 도시은행들은 무려 50개를 늘리 해외직접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종래까지의 동경은행 주도에서 도시은행 주도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던 시기이다. 자금조달면에서는 다양화된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1979년 7월부터 5년 만기 CD발행과 은행채 발행을 협용하여 1979년 12월 富

〈표 Ⅲ-8〉 미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모회사로부니의 송금에만 의존	현지 은행에 의존	일본계 은행만 이	일본계 은행 및 외국은행 이용	외국은행 만 이
진출시 자금	101	38	35	2
장기 자금	18	44	29	9
단기 자금	2	108	86	17
				5

자료 : 일본무역진흥회, 「미국·일본계 기업에 의한 자금조달 실태」, 1980.

土(Fuji)은행의 100% 자회사인 스위스 富士(Fuji)가 2,000만 스위스프랑의 국내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화되게 되었다.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자금조달형태를 보면 일본은행의 선호가 주목을 끈다. 〈표 Ⅲ-8〉에는 1980년 시점에 미국에 있어서의 일본기업의 자금조달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현지에서 단기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108개 일본기업중에서 일본계 은행만을 이용하는 기업이 86개나 되고 일본계 은행과 외국은행들을 병행하여 거래하는 기업은 17개이며 외국은행만을 거래하는 기업은 5개밖에 되지 않는다.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들도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을 하는데 있어서 미국계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많을 것은 분명할 것이며 이는 미국계 은행들의 국제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0년 시점의 일본계 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은행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진출한 거의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이 일본계 은행들의 해외지점만을 이용해 주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1980년에 일본은 외환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종래까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던 외환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며 국내에서의 외화대출, 특히 중장기 대출에 대한 제한도 전면적으로 철폐되었다. 일본은행의 해외거점 설치에 대해서는 1982년, 1983년에 각 은행당 2점포씩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범위내에서 설치를 인정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주적 판단을 존중하여 매년 특정지역에 과도한 진출이나 상호주의 문제 등의 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인가를 하였다. 해외주재원 사무소에 대해서는 종래 연 1회 설치요망을 검토하던 것을 1982년부터는 연 2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1984년부터는 선물환거래도 실수원칙이 폐기되었으며 또한 엔-달러 위원회의 압력에 의해 유로엔거래도 자유로워졌다. 제 2 차 석유파동을 슬기롭게 넘어감에 따라 일본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도 높아져서 오일머니가 일본으로 유입되었으며 1985년까지의 달러강세를 촉진제로 대폭적인 무역흑자시대에 진입하기도 하였다. 1985년에는 싱가폴 금융선물시장(SIMFX)에 선물거래업무에만 종사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호주와 상호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법

인 형태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국제화의 진전으로 증권업무, 신탁업무, 리스업무를 하는 현지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며, 이는 종래와 같이 자금대여에 의한 이자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업무운영에서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개의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 손익면에서는 1985년도에는 일본 국내외환은행의 외환부문 손익이 9,936억엔이었으며, 이는 각 은행이 국제업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 취급고가 39% 증가를 보인 것에 반해 외환손익의 신장이 8%인 것은 외환취급고의 대폭적인 신장이 이자율차이가 적은 임팩트론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일본계 은행에 대한 중장기 외화대출제한(제2유형 거래)이 철폐되자 이 시장에서의 일본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였다. 즉 1981년에 중장기 외화대출에서 일본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1981년에는 49.8%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6년에는 91.2%로 증가하여 일본에 주재하는 외국은행지점들을 이 시장에서 거의 축출하다시피 하였다. 아래의 〈표 III-9〉 〈표 II-10〉에서는 일본 단기대외부의 관리추이와 일본 중장기 대외부의 관리추이가 나타나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업무의 자유화 진전과 함께 이때까지 실시되어온 주요 국내은행의 대외거래에 관한 건전성의 가이드라인을 1985년 5월 및 1986년 5월에 수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불능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위험자산비율(계정조정후 총 대외자산은 유가

〈표 III-9〉 일본 단기대외부의 관리추이

	외 화 표 시	엔 화 표 시
1972. 10	포괄허가	1972. 10 포괄허가
1974. 7	잔고순증금지	1974. 7 잔고순증금지
1977. 6	잔고규제철폐	1977. 6 잔고규제철폐
1980. 12	신고제	1980. 12 신고제

〈표 III-10〉 일본 중장기 대외부의 관리추이

	외 화 표 시	엔 화 표 시
1972. 10	포괄허가	1972. 10 포괄허가
1974. 1	개별허가	1974. 1 개별허가
1976. 11	환은결 한도제한내에서 허가	1976. 11 원칙자유
1977. 7	중장기 자금의 조달액을 기준으로해서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커미트를 인정한다	
1978. 7	주요환은포괄허가	1979. 4 억제방침
1980. 4	주요환은업무계획 작성	1980. 10 엔표시해제
1980. 12	신고제	1980. 12 신고제

〈표 III-11〉 외국환은행의 대외 대부 잔고 (단위 : 10억 달러)

년도	외 화	엔 화	계	단 기	중 장 기	국 내 챙	해 외 지점 (그 중 유로엔)
1973	13.3	—	13.3	6.0	7.3	—	—
74	16.6	0.1	16.7	8.0	8.7	—	—
75	17.8	0.2	18.0	9.1	8.9	—	—
76	17.4	0.3	17.7	9.2	8.5	5.3	12.4
77	18.3	0.6	18.9	9.4	9.5	5.0	13.9
78	30.0	3.9	33.9	12.0	21.9	9.4	24.5
79	43.6	9.2	52.8	15.1	37.7	9.8	43.0
80	54.9	9.1	64.0	22.9	41.1	19.0	45.0
81	74.3	13.6	87.9	34.6	53.3	18.3	69.6
82	92.6	15.5	108.1	41.0	67.1	23.9	84.2
83	102.6	19.8	122.4	44.8	77.6	30.0	92.4(0.08)
84	123.0	29.0	152.0	57.6	94.4	36.0	116.0(0.24)
85	134.4	35.2	169.6	61.7	107.9	58.5	111.1(0.60)
86	169.1	57.2	226.3	74.1	152.2	67.5	158.8(1.87)

자료 : 대장성, 「국제금융국 연보」

증권을 포함한 수익의 70%를 가미한 자기자본의 3.5배 이내) 이 감정시행의 형태로 도입되어, 종래의 자기자본비율규제(총대외자산은 자기자본의 14배 이내)는 폐지되었다. 둘째, 유동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유동성 비율(외환자산/외화부채)의 모니터링을 하기로 되어서, 종래의 자금거래비율규제(정기성예금 및 call loan의 잔고는 총외화자산의 60% 이내)는 폐지되었다. 세째, 컨트리 리스크에 관한 가이드 라인으로는 국가 한도(Country Limit, 「한나라에 대한 중장기 대부잔고(커미트 종료 후의 미실행잔고를 포함)는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미국과 같은 우량국에 대한 대부 및 Rescheduling 국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초과를 승인하는 예외가 있다.

일본계 은행의 해외지점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88년 말에는 지점이 254개, 현지 법인이 236개, 해외사무소가 423개로 늘어났으며 동경은행의 주도적 위치는 거의 사라졌으며 1985년부터는 해외대출자산면에서 미국은행들을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¹¹⁾

〈표 III-11〉에는 1973년부터 1986년까지의 일본의 외국환은행들의 대외대출잔고의 변화가 거래통화별 및 거래된 장소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절대금액면에서 성장을 선도한 것은 역시 해외지점에서의 국제금융업무의 신장이 있으며 특히 유로금융시장에서의 신더케이트론에의 참가이었다.

(11)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환경변화와 은행경영전략」, 1989. 12.

다만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일본계 은행들이 유로도매시장업무에서 미국계 은행들과 경쟁하여 이겼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는 (1) 일본계 은행들이 국제화를 급격히 추진하는 일본기업들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 (2) 일본계 은행들이 자본비율의 약화를 무시하고 유로시장에서 단기차입을 늘렸다는 점, (3) 일본계 은행들이 체신성을 무시하고 대출이자율면에서 덤핑을 하여 시장침투를 하였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1980년에 이르러서도 역시 엔화대출의 비중이 외화표시대출의 비중보다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1970년대에는 그 상대비중이 10분의 1도 되지 않던 것이 1980년에는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으로 엔화대출의 비중이 커졌다. 이에는 물론 1983년부터 시작된 유로엔대출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은 극히 적고 주로 국내점에서 해외거주자 대상으로 엔화표시로 대출을 하는 형태(제 3 유형 거래)이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자국통화인 미국달러표시의 대외대출이 주로 유로시장을 통해 일어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다음에서는 일본 은행기관의 국제화성장 및 경쟁력 강화추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임팩트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임팩트론은 1980년 이전의 개념으로 외화차관의 형태 중 차입자금의 용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Tied Loan이라고 한다. 1980년 12월 신외환법 시행 이후 외화차관의 분류방법이 종전의 임팩트론과 타이드론에서 임팩트론과 거주자의 비거주자의 금융기관차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팩트론의 개념도 변화하였는데 신외환법 시행 이후 임팩트론은 사용 용도의 제한이 없는 외화대출 즉, 일본소재 외국환은행을 경유하는 거주자 외화차입을 의미한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1977년 중에 있어서 임팩트론의 도입은 전년비 26.8% 감퇴한 14억 8천만달러였고 업종별로 볼 때에는 철강, 조선, 화학의 3업종이 전체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출은행의 국적은 미국이 약 60%를 점하고 있고, 표시통화도 미국 달리가 92.9%를 점하였다.

도입측면에서 종래에는 도입기업의 자금수요, 내외의 금융정책, 차입조건, 국제수지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했으나 1979년 12월 18일 「외국환 및 무역관리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자유취급을 인정하였고 사용측면에서도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설비자금과 장기운전자금(연봉수출선조선자금, 리스자산 구입자금)만을 인정하다가 1978년 4월 이후 상사를 제외한 일반회사의 타당한 사용을 허용하여 외국에 대한 장기연불신용공여, 해외공사를 위한 국내 자재구입 자금 등을 인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9년 5월 11일에 「장기임팩트론자금 사용 제한에 대한 완화」를 통해 상사의 수출채권 헛

〈표 III-12〉 임팩트론 실적

(단위 : 억 달러)

	단 기		중 장 기	
	일 본 은 행	외 국 은 행	일 본 은 행	외 국 은 행
1980	1,246	262	1,474	2,154
81	38,741	16,284	1,207	1,344
82	96,112	105,636	2,329	2,172
83	154,974	118,223	2,631	1,744
84	244,403	160,923	3,594	1,091
85	300,477	202,381	6,331	1,020
86	528,426	208,782	14,133	1,358
87	961,727	198,154	23,204	1,863
88	1,696,700	225,000	23,435	9,700

자료 : 대장성, 「국제금융국 연보」

지를 위한 임팩트론을 허용하고 「단기 임팩트론의 해금」을 통해 3년 이내의 임팩트론도 허용하였다.

1980년 3월 「자본유입 촉진조치」로 일본은행에 의한 임팩트론 발행허가가 단행되어 일본은행에 의한 임팩트론의 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거래실적이 외국은행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신외환법 시행 이후의 임팩트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81년도 말의 잔고가 전년도의 93억 달러에 비하여 203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면에서는 중장기 임팩트론은 금리상승 등의 요인에 의하여 잔고감소추이를 보였으나, 단기 임팩트론이 대폭 증가하였다. 둘째, 임팩트론이 종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신청, 허인가받는 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시간적으로 적시에 도입, 소액화, 일반화되었다. 셋째, 스왑을 연결한 임팩트론의 실질 엔 차입코스트와 은행으로부터의 엔 차입코스트의 비교에 따라 단기 임팩트론의 실행액이 증감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982년 이는 일본의 차입자들이 장기 대외채권의 위험해지수단으로서 중장기 임팩트론의 사용 증가와 저리 안정성을 갖는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함과 동시에 일본의 차입기업들에게 임팩트론이 대중화되고, 증권회사들이 내외금리차를 이용한 금리재정거래를 위해 임팩트론 도입을 활발히 한 데 기인하였다. 따라서 중장기 임팩트론(상환기간 1년 초과)도 취급실적이 총 45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9억 5천만달러(76%)가 증가하였다. 단기 임팩트론(상환기간 1년 이내) 취급실적은 총 2,017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약 3.7배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1983년에 들어 장기 자금수요의 저조, 국내 장기 금리가 저하, 일본소재 외국은행의 기일결제가 많아져서(일본에 와 있는 외국은행에는 종래 신외환법 이전부터 중장기 임팩트론 도입을 허락했기에 일본은행들에 비해 만기도래건수가 많기 때문임)

중장기 임팩트론은 저조하였으나, 단기 임팩트론은 실행액과 잔고가 증가하여 일반에 더욱 넓게 확산되었고, 차입자인 기업에게도 크게 확대되었다. 증권회사 등이 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금리재정거래로 임팩트론 도입을 활발함에 따라 단기 임팩트론은 신외환법 직후부터 금증, 1984년 들어 증가를 계속하여 중장기 잔고의 4배를 초과 단기 임팩트론이 임팩트론의 중심이 되었다. 거래는 증권회사 중심으로 행해졌고 그 기간은 10일에서 1주간, 경우에 따라서는 2일, Overnight라 불리는 초단기였다. 금액적으로는 1,000만달러, 2,000만달러 등 대규모로 원래 임팩트론의 도입목적인 위험했지나 설비자금보다는 운용자금 도입목적으로 임팩트론을 이용하는 성격이 차입자에게 강하였다. 그리고 은행 특히 도시은행 등 주요 일본은행에 있어서 임팩트론은 엔대부 및 엔자금포지션의 조정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85년 이후 스위스 프랑이 지금리 상태가 되어 기업이 중장기 임팩트론의 도입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중장기 임팩트론은 다시 증가하여 1988에 258억 달러에 달하였고 단기 임팩트론도 16,967억 달러에 달하였다.

2. 일본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특징

일본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을 미국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계 은행은 국채수지가 적자이며 자국통화가 국제거래의 통화가 아닌 시점에서 국제화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외환 및 자본거래에 많은 제한이 있었으며 해외진출도 외국환전문은행인 동경은행이 독점적으로 선도하였다. 초기에 동경은행 해외지점의 업무중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국제도매금융업무를 차입자의 측면에서 먼저 시작하였다는 것이 미국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둘째, 일본의 엔이 국제통화로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엔화 표시의 해외대출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해외지점을 통하여 일어난 게 아니라 국내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세째, 일본계 은행기관의 국제화는 일본 금융당국의 통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통제가 풀린 시점부터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가장 좋은 예는 국내에서 외환, 자본 통제가 심 할 때에도 유로엔의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대장성의 표나지 않는 행정지도의 힘이 일본계 은행들의 국내업무만이 아니라 국외지점업무에도 미치는 통제의 대칭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일본계 은행들의 국제화 과정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역 금융 중심→해외에서 자국기업에 대한 대출→유로시장에서의 도매금융”이라는 전형적인 발전단계를 밟고 있다. 그러

나 미국과의 차이점은 (1) 무역금융을 미국달러라는 외국통화로 하였다는 점, (2) 해외에서 자국기업에게 서비스할 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입장에서 하자는 않았다는 점, (3) 유로시장에서 미국계 은행과 경쟁하기 위하여 자본비율과 수익성을 희생하였다라는 점 등이다. 미국계 은행들도 해외에서 그 나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소매은행업에 진출은 하고 있으나 Citi은행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데 반하여 일본계 은행들은 해외에 있는 일본계 교포들을 시발점으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현지 소매은행업무에 깊이 진출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난다.

제IV장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에 대해서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의 대외 진출을 구조적 측면과 실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본 다음,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앞에서의 8가지 분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의 국제화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1절 우리나라 은행의 대외 진출

여기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은행의 대외 진출을 구조적 측면과 실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한다.

1. 구조적 (Structural) 측면

구조적 측면에서 대외진출을 분석할 때는 주로 대외진출을 한 해외거점의 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상례이다. 해외거점은 해외사무소,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등 형태별 차이가 있다. 해외사무소는 주재지역의 금융, 외환, 무역, 기타 경제동향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과 외화자금 조달, 교섭 및 알선을 주업무로 하며 실제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할 수는 없다. 해외지점은 현지에서 예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본점의 분신으로서 전체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하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의 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된 현지 회사이므로 법률적으로는 국내의 본사와 분리된 법인이다. 1989년 11월 현재 개설기준으로 볼 때 시중은행, 외환은행 및 기타 특수은행들(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의 해외진출은 사무소가 56개, 지점이 52개, 현지법인이 28개로 총 136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까지 한국은행이 해외에 가지고 있던 해외사무소망을 외환전문은행으로 출발한 한국외환은행이 인수하는 것을 기점으로 상업은행의 대외진출이 시작되었다 (<표 IV-1> 참조). 1967년 인수시점에는 New York, L.A., Tokyo, Osaka, HongKong의 다섯개 지점이었으며 다음해 London의 지점이 추가되었다. 이 당시만 해도 한국기업의 해외

<표 W-1> 외환은행과 시중은행의 협태별 지역 진출 추이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N.Y.	外																							
L.A.	外																							
Chicago																								
Seattle																								
Broadway																								
Flushing																								
San Fran.																								
Toronto																								
Vancouver																								
Panama																								
London	外																							
Paris																								
Frankfurt	外																							
Amsterdam																								
Tokyo	外	한																						
Osaka	外	한																						
Fukuoka																								
Hongkong	外																							
Singapore																								
Manila																								
Australia																								
Bahrain	外																							
시중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4 4	8 8	2 2	5(2) 5(3)	3(1) 3(2)	1 1	0 0	0 0	1 1	1(1) 1(1)	0 0	2(2) 2(2)	25(7) 41(9)	1 1

주 : []—한국지역인, 外—외환은행, 서—서울신탁은행, 상—상업은행, 한—한국은행, 서—제일은행, 조—조흥은행을 나타냄.

진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외지점은 국내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자금의 조달창구로서의 역할과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 시중은행의 대외진출은 1968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한일은행은 동경에, 제일은행은 오사카에 지점을 설립하고 현지 교포들을 대상으로 소매금융업무를 시작하였다. 해외 협회법인은 1974년 L.A.에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을 전담하기 위해 외환은행이 설립한 CKB가 효시이며 1976년 홍콩에 외환은행이 설립한 Merchant Bank 형태인 KAF가 국제도매금융을 하기 위한 협회법인의 효시이다.

1976년 까지 은행의 해외진출을 해외지점 및 협회법인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외환은행은 해외지점이 10개, 협회법인이 2개인 반면, 일반 시중은행은 한일은행, 제일은행 및 상업은행이 각각 해외지점 하나로 은행의 대외진출에 관한 한 외환은행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은 1977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는 바 1977년부터 1980년 4년 동안 외환은행은 해외지점을 3개 더 늘인 반면 시중은행들은 해외지점 17개, 협회법인 2개를 늘여 시중은행 전체의 해외지점의 총수가 외환은행의 해외지점수를 능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1965년 도시은행들의 해외지점의 총수(28개)가 외환전문은행인 동경은행의 해외지점의 수(25개)를 처음 초과한 시점과는 약 15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은행의 해외진출은 현재 은행법과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진출형태에 따라 재무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은행감독원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¹²⁾ 기업의 해외진출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은 국가별 상호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진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2. 실적(Performance)의 측면

실적측면에서 국제화의 정도 또는 공현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1) 해외지점의 자산이 은행 전체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해외지점의 영업 이익이 은행 전체의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의 기준들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은행과 시중은행들의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외환은행의 경우 해외지점운용의 실적은 <표 IV-2>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지점 자산의 비중은 한국은행의 지점들을 그대로 인수한 1967년에는 6.8%이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1980년 22.3%까지 이른 후 약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80년 경을 기점으로 외환은행이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여 국내지점망을 대폭 확장하여 국내대출을 넓힌 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기순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해

(12)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인허가, 영업제한에 대한 규제내용은 부록 참조.

〈표 N-2〉 외환은행 국제업무의 비중 (단위 : 억 원)

		1967	1970	1973	1976	1977	1980	1983	1986	1988
자 산	총자산	2,245	8,375	15,978	25,271	38,260	108,800	147,875	192,169	181,619
	국 내	2,092	7,631	14,342	22,452	31,294	84,486	117,057	155,189	134,847
	국 외	154	744	1,635	2,819	6,966	24,319	30,818	36,980	46,772
당 기	총이익	12.2	16.4	46	146	185	339	73	254	406
	국 내	11.2	-5.7	40	119	168	201	-18	155	—
	순이익	(91.8)	(-3.6)	(87.0)	(81.5)	(91.8)	(59.3)	(-2.6)	(61.0)	—
이익률	국 외	0.9	22.3	6	27	17	138	92	99	—
	ROA	0.54	0.19	0.29	0.58	0.48	0.31	0.05	0.13	0.28
	국 내	0.53	-0.07	0.28	0.53	0.54	0.24	-0.01	0.10	—
	국 외	0.60	3.00	0.37	0.96	0.24	0.57	0.08	0.27	—

자료 : 외환은행 내부자료에 근거해 재구성 한 것임

주 : 1988년은 자료원의 상이함으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외지점들의 비중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으며 이는 해외지점의 경우 자산수익율이 국내의 경우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1973년과 1977년 두 해를 예외로 하면 해외지점들의 당기이익면에서의 공헌도는 자산의 비중보다 언제나 높았던 것이다. 특히 1970년과 1983년의 경우 국내영업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해외지점의 당기순이익이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1988년 시점에는 은행 총이익의 48%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점에서 이익의 발생은 중개업무에서의 이익, 유가증권투자로부터의 이익과 수수료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해외지점의 소재지에 따라 이익발생의 원천에 차이가 난다.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소매업무를 하는 해외지점에서는 중개업무에서의 이익비중이 높고, 한국기업들이 특히 무역회사들의 해외지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는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중개업무의 이익도 크지만 신용장개설 등에 의한 수수료 수입의 비중도 크다. 한편 국제금융센타에 진출하여 있는 해외지사는 소재지에서 조달한 금융을 다른 해외지점 또는 국내지점에 분지사거래로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업무이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교포들도 있고 한국기업의 해외지사들도 많이 소재하고 있고 국제금융센타로서 외화자금의 조달도 용이한 뉴욕과 동경을 해외지점 개설지로 모든 은행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해외지점의 당기순이익에 유가증권투자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는 외환은행이 1990년 일반은행화하기 전까지는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투자의 재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가증권의 투자가 해외 각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표 N-3〉 5개 시은의 주요외화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1983말			1988말		
	국내	해외지점	계	국내	해외지점	계
매입외환	1,474,379 (4.1)	265,501 (0.7)	1,739,880 (4.8)	2,081,814 (3.8)	96,141 (0.2)	2,177,955 (4.0)
외화예치금	681,868 (1.9)	504,316 (1.4)	1,186,184 (3.3)	904,358 (1.6)	748,005 (1.4)	1,652,363 (3.0)
외화대출금	499,417 (1.4)	2,646,918 (7.3)	3,146,335 (8.7)	1,224,999 (2.2)	2,172,740 (4.9)	3,937,739 (7.1)
외화유가증권	26,034 (—)	317,234 (0.9)	343,268 (0.9)	375,741 (1.0)	782,512 (1.1)	1,158,253 (2.1)
주요외화자산계	2,681,698 (7.4)	3,733,969 (10.3)	6,415,667 (17.7)	4,586,912 (8.3)	4,339,398 (7.9)	8,926,310 (16.2)
총자산	32,921,510 (90.6)	3,417,673 (9.4)	36,339,183 (100.0)	51,046,227 (92.4)	4,200,673 (7.6)	55,246,900 (100.0)

주 : 1. ()는 구성비

2. 외화대출금=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외화클론

자료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환경변화와 은행경영전략], 1989. 12.

것은 아니었으며 국제금융센타에 있는 지점들이 운용하여 그 수익만을 각 지점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각 지점의 수익과는 관계가 약하며 특히 은행법에 의해 유가증권투자에 제한을 받을 경우 유가증권투자 확대를 통한 해외자산의 성장 또는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경우에는 1977년부터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외환은행에 비교하면 국제화 정도가 훨씬 뒤쳐 있다. 〈표 N-3〉에는 5개 시중은행들의 주요 외화자산의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보면 1983년 말 시점에서 해외지점의 자산의 비중은 9.4%에 불과하며 그나마 1988년 말에는 7.6%로 하락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해외지점의 이익이 은행 전체의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1988년 시점에 해외지점에서 시중은행들의 외화자금이 자율은 평균 6.4%로서 외환은행의 평균조달비용인 6.3%에 비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자금운용의 평균 수익률의 경우 7.0%에 불과한 외환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7.4%로서 은행들은 해외지점에서 자산의 규모는 적으나 수익성이 높은 업무에 더 치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시중은행이나 외환은행이나 해외지점의 외화자금조달이 자율 및 자금운용 수익률은 국내점보다 낮은데 이는 국내점의 경우 자금조달을 한은수탁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외화대출의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88년의 외화자금 중계이익률(운용수익률-조달이익률)은 해외지점이 국내점보다 높으나 1983년에 비해서는 하락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점포에서의 은행기관의 국제화

1. 거주자대상—원화금융거래(제 1 유형 거래)

국내에서 국제 거주자에게 자국통화로 대출하는 거래로서 전형적인 국내금융의 형태이나 Davis는 대출의 대상이 기업의 국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무역금융인 경우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제 1 단계의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거의 자국통화인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금융이라 하면 거의 자국통화표시여서 제 1 유형의 거래가 되나 우리나라의 경우의 무역금융은 반드시 원화표시 만은 아니다.

현재 무역금융은 단기무역금융(180일 이내), 중장기 무역금융(6개월~10년 이내) 및 해외금융으로 나뉘며 단기무역금융은 다시 선적전 금융과 선적후 금융으로 나뉘어 선적전 금융을 협의의 무역금융이라 하고 무역금융 중 이 금융만이 원화표시로 일어나고 나머지 금융은 외화표시가 된다.

신적진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의 자동적 재할인 및 우대금리적용 등으로 인해 수출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재도금으로서 급격한 수출신장에 힘입어 은행의 성장성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1986년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자 읍자대상거래, 읍자단가, 읍자대상기업이 보다 엄격하게 되어 그 규모가 현격하게 줄어 들었다.

협의의 무역금융은 국내점에서 수행하는 원화금융이어서 은행기관의 국제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장차 해외에 판매지사 또는 생산지사를 설립하는 회사들이 바로 국내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를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유대강화가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기본 힘이 되며 따라서 국내에서 주거래은행관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2. 거주자대상—외화금융거래(제 2 유형 거래)

은행들이 국내에서 국내거주자에게 외화표시로 대출을 하는 것으로서 취급하는 은행과 거래대상에 따라 매입외환, 외화대출, 전내, 중장기 무역금융 등이 있다.

매입외환은 선적후 밀행하는 환어음을 일람급신용장인 경우에는 우편기간동안 기한부신용장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외화금융을 제공하는 선적후 금융으로서 선적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외국환은행들이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정책금융이다. 은행들은 대개의 경우 Refinance로 이 자금을 동원하여 만기가 되어 조달되는 외화를 수입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매매이익이 은행의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확보에 경쟁이 심하다. 매입외환의 규모는 5개 시중은행의 경우 1조 4천억 정도의 규모에서 1988년 말 2조를 넘는 규모로 수출의 신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표 N-4〉 한국 주요 은행의 외화표시대출금 추이 (단위 : bil. won)

	85년 말 (비 중)	89년 말 (비 중)
서 중 은 행	486 (6.35)	1,970 (19.67)
외 국 은 행	2,220 (29.02)	1,831 (18.28)
외 환 은 행	580 (7.58)	2,339 (23.36)
산 업 은 행	1,016 (13.28)	2,204 (22.01)
수 출 입 은 행	3,349 (43.77)	1,670 (16.68)
합 계	7,651(100.00)	10,014(100.00)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0. 3.

외화대출은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및 동 세칙에 의거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용 원자재나 외화회득용 시설재의 수입대금 등 국민경제 발전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제도이다. 다만 동제도는 수입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란 측면에서 수입수요를 유발시켜 국제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여신이란 측면에서 볼 때 국내통화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그 운용에 있어 정부의 규제가 심했다. 일본의 경우 임팩트론의 취급에서도 1980년까지 마찬가지였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화대출에 있어서는 외국은행 한국지점들의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높았다. 즉 〈표 N-4〉에서 보듯이 1985년 시점에 외국은행의 외화대출금액은 2조원을 넘어 5개 시중은행의 합이나 또는 외환전문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의 외화대출액보다 4배나 큰 금액이었다. 1986년 이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정부에서는 해외자금유입으로 인한 국내통화압박을 해소하고 차관의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고를 조기상환자금으로 국내외국환은행에 특별수탁하였기 때문에 1989년 시점에는 국내은행의 외화대출이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의 비중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 외화대출에 있어서 현재시점에서의 문제점은 (1) 국내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조달을 타의에 의해 한국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2) 외화대출의 금리가 평균 LIBOR plus 1.25%로 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 빌릴 때의 평균 금리인 LIBOR plus 0.3~0.5%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아직 자본통제가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이자일지라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대출을 쓰고 있지만 자본자유화가 되는 경우 외국은행들과의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일본의 경우 임팩트론에 대한 취급제한이 풀린 후 일본계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한 것을 참고로 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대의 경우 외국의 개발은행, 특히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도

입하여 국내기업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등이 설비자금으로 국내기업에게 외화표시로 대출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진국의 단계에 접어들에 따라 개발은행들로부터의 자금도입은 준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특별수탁금에 의한 외화자금 대출이 늘어 전대의 규모는 산업은행의 경우 1985년 1조원 상당에서 1989년 2조원 이상의 상당금액으로 크게 늘었다.

중장기 무역금융은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 최장 10년 이내의 연별 수출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전담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외국환은행들이 협조용자를 하고 있다. 중장기 무역금융은 주로 자본재의 수출을 위한 것으로서 특히 선박수출에 대한 금융의 비중이 크며 최근까지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적어 1989년 시점의 수출입은행 외화대출금의 크기가 1985년에 비해 절대액의 측면에서도 줄어 들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금융도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계 은행들이 해외에서 중개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고객이 한국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관계를 맺는 것이 좋으므로 해외지점이 없는 수출입은행이 신규 해외투자자금 공급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해외지점이 많은 외환은행과 서중은행들에게 이 업무를 이양해야 될 것이다.

한편 거주자가 외화표시 예금을 하는 것은 그 외화가 수출 등 실수거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외환관리법의 외화집중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에 제한없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체들은 만성적인 원화자금 부족상태에 있으므로 원화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평가절하된다는 전망이 없는 한 거주자외화계정에 자금을 예치할 겨를이 없이 원화로 교환하여 버리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회수에 제한이 없이 1회당 \$5,000까지 원화를 외화로 교환할 수 있었으므로 달러를 소지할 수는 있었다. 다만 외화표시의 예금은 \$50,000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가 다시 악화되고 또한 달러로 환전한 돈이 사치성 해외여행을 유발시키거나 해외로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부작용이 생기자 개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외화로 환전할 수 있던 환전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거주자로부터 외화표시 예금을 확보하는 데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비거주자대상—원화금융거래(제 3 유형 거래)

비거주자가 원화로 예금을 하거나 또는 원화표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화가 교환성(Convertibility)이 있어야 한다.

원화의 교환성 확보는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의 하나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1988년 11월 1일 이행에 앞서 6월에 원화국제화의 단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88년 말에 시행된 제 1 단계에서는 우선 경상거래시에 원화표시를 전면 허용하고 비거주자가 해외반출한 2,000,000원 범위내의 원화를 외국환은행 국외지점에 원화 예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제 7 유형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제 2 단계부터 제 4 단계의 원화국제화 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시 날짜는 없고 다만 실시의 전제가 되는 금융환경만 예시가 되어 있다. 제 2 단계는 환율 및 금리의 시장기능이 제고되고 자본수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시행하는 단계로서 경상거래에서 원화결제도 허용되고 또한 결제에 의해 발생한 원화를 국내은행 자유원계정에 제한 없이 예금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 국외지점에서도 금액에 제한 없이 원화예금이 가능하게 된다. 국내은행기관이 선진화되고 본격적인 자본 수출기에 접어들면 외국환 집중 의무를 철폐하고 자본거래에서도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에 자본거래적 성격의 예금도 허용한다. 원화국제화의 마지막 단계인 제 4 단계는 국내금융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시점으로 이 단계에 와서야 비거주자의 원화표시 내국채 취득 및 발행과 거주자, 비거주자가 유로원채의 발행을 허용하고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로원 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되어 있다.

위의 원화국제화계획은 원화표시 국제금융거래인 제 3, 5, 7 유형의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그 계획을 발표할 때의 의도는 IMF 8조국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화국제화 계획을 발표하는데 있었으므로 1988년 당장 시행한 제 1 단계의 계획을 제외한 여타 계획들은 치밀성이 결여된다. 미국은행들의 국제화가 기본적으로 유로달러시장의 성장과 같이 하고 있고 일본계 은행들의 국제화도 엔화의 국제화의 진척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국내점의 국제화 뿐아니라 해외지점의 국제화도 원화국제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비거주자대상—외화금융거래(제 4 유형 거래)

국내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표시로 예금을 받고 또한 외화표시로 대출을 하는 업무이다. 이는 거래하는 장소(한국)와 거래하는 통화(외화)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유로금융이 되고 또한 예금자와 차입자가 모두 비거주자이므로 Offshore 거래가 된다. 유로금융인 경우 원래는 거래하는 장소의 금융당국이나 또는 거래되는 통화의 금융당국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같은 유로금융인 제 2 유형의 거래에서는 거래대상이 거주자이었기 때문에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 4 유형의 거래는 유로금융이면서 동시에 Offshore 거래이기 때문에 Offshore 시장이 행정적으로 Onshore 시장과 분리가 가능하다면 Offshore 시장에서의 거래는 국내금융정책, 국제수지 및 외화보유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 외화금융증개에 따른 고용 및 조세효과만 있으므로 국내에 역외시

장 육성의 가능성은 여러번 검토하였다.

역외시장 육성에는 크게 두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는 영국이나 홍콩과 같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이 없이 금융거래에 대해 세계상의 혜택을 주어 국제금융센타로 성장하는 방법과 싱가폴과 같은 비거주자의 거래에 대해서만 특별히 세계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역외시장의 육성에는 이러한 방법의 선택보다도 당해국의 정치적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 국제적 신인도 등이 더욱 중요하며 기술적으로는 시간대, 국제통신망의 정비, 당해국통화의 교환성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동경, 싱가폴, 홍콩, 대만, 마닐라 등 우리나라와 실물경제에서 경쟁하는 모든 나라에 역외시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역외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도 역외시장이 있으나 그 설립 배경은 여타 역외시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은 자국통화가 해외에서 유로거래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IBF는 제 4유형의 거래확장보다도 제 3유형의 거래확장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다만 IBF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자국 거주자들이 행하는 자국통화의 유로거래를 탈환할 수는 없으며 비거주자들이 행하는 자국통화의 유로거래의 일부만을 탈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도 역외시장을 육성해야 하겠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많으나 비거주자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외화거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장래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라 하겠다. 즉 비거주자들이 미국달러로 예금 및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런던시장이 있으며 동남아시아에도 이미 성숙한 동경, 홍콩 및 싱가폴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일단 일본의 거주자들은 동경의 역외시장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를 동경을 제외한 국제금융시장과 경쟁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자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시간대도 동일하여 또한 일본경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으므로 일본엔에 대한 역외시장은 국내의 정치가 안정만 된다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제 3절 국외점포에서의 은행기관의 국제화

1. 거주자대상—원화금융거래(제 5 유형 거래)

제 5 유형 거래는 우리나라의 은행의 해외지점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업무이다. 거주자와 원화거래를 하는 것은 국내점의 고유업무로 생각하기 쉬우나 미국의 경우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국통화인 달러대출을 하는 유로달러 시장에서의 업무증대가 미국계 은행국제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80년대 중반 유로엔 거래의 인정이 일본계 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장악하는 데 기여

를 하였다. 다만 미국의 경우 유로달러시장의 출반이 미국에서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상업은행들의 도피였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유로엔 거래마저도 대장성이 인가를 하고서야 가능해졌다는 것이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로원화의 거래가 정부의 인정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발표된 원화국제화의 계획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인 제4단계에 가서야 유로시장에서 유로원화 대출을 인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4단계의 구체적인 진입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거주자 대상의 유로원화 대출업무의 확대를 통한 국제업무의 확대 가능성은 아직 요원하다고 보겠다.

2. 거주자대상—외화금융거래(제 6 유형 거래)

해외지점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표시로 거래를 하는 테에는 그 외화가 소재지의 법화인가 아니면 제3국의 통화인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자인 경우에는 해외지점 소재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금융이므로 그 나라 금융당국의 규제의 대상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유로금융이므로 규제가 적다.

본고에서는 은행거래를 분류할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분류를 하였기 때문에 거주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를 뜻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거주자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며 국제조세원칙상 조세부담을 가지는 나라의 거주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지점들이 미국의 거주자인가 아니면 한국의 거주자인가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규정의 기준에서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리의 전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은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소재지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은행이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공히 해외진출의 초기단계에서는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자국기업의 현지 지점들과의 거래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거래에서 이루어 놓은 은행—고객관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N-5>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들은 현지 금융수요 중 약 25% 정도만을

<표 N-5> 현지금융 차입은행별 구성비 (단위 : 구성비, %)

은 행 별	87말	88말
외 국 계 은 행	72.0	75.2
국 내 은 행 해 외 지점	28.0	24.8

우리나라의 해외지점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큰 차이점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이라면 아직 해외직접투자의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현지생산을 위한 자금이라기 보다는 해외판매지사에 대한 무역금융의 제공이 주종이 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의 해외판매회사들이 설립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기업들의 신인도가 낮아서 현지의 은행들로부터 대출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하여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지점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특히 종합상사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 신인도가 최근 높아진 기업들의 경우에는 외국은행들이 훨씬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로부터의 이탈현상이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이탈현상에 대한 이유들을 물어 보았을 때 그들은 외국계 은행들이 대출이자율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이유 이외에도 (1) 분야별 전문화로 서비스의 전문성이 앞설, (2)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림, (3)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나 신상품 도입개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운용함, (4) 국내의 까다로운 외국환관리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음, (5)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 금리 및 수수료를 차이를 둠, (6) 국내은행과 달리 관료적 자세가 없음, (7) 금융서비스 이외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함, (8) Global Relationship으로 거래선을 관리함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영내외적인 측면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뜻이 되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볼 때 그나마 국내에서 거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마저도 우리나라 은행들에서 이탈한다면 해외에서 아무런 인연이 없는 외국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은행기관의 국제화 초기에 일본의 은행들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큰 은행이 아니었는 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업들은 거의 전부가 일본계 은행을 이용하였으며 이것이 일본계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한국계 기업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은행은 은행대로 자금조달비용 때문에 대출이자율은 외국계 은행과 경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만은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현지금융에 대하여 아직도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현지금융에 대한 제한을 외국계 은행에는 잘 적용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해외지점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치산업보호의 입장에서 해외진출의 초기에 정부의 보호가 있었으면 더욱 좋은 일이나 적어도 우리나라 정부의 규정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외국계 은행에 대하여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되겠다. .

3. 비거주자대상—원화금융거래(제 7 유형 거래)

우리나라 은행들의 해외지점이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표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것은 제 5 유형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가 유로원의 거래를 인정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다만 유로원화의 거래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인 경우보다 통제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원화국제화 과정에서 비거주자가 원화를 소유할 수 있는 제 3 단계부터는 우리나라 정부의 인정이 없어도 외국계 은행들이 먼저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4. 비거주자대상—외화금융거래(제 8 유형 거래)

해외지점이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표시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비거주자가 소재지의 거주자나 아니나 또는 거래되는 외화통화가 소재지의 법화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시 네 가지 유형의 거래(8-1, 8-2, 8-3, 8-4)로 나뉜다고 전술한 바 있다. 유로거래인 8-3, 8-4 형태의 거래는 다른 유로거래인 제 2, 4, 5 유형의 거래를 설명할 때의 성격과 동일하고 Offshore 거래인 8-2 유형의 거래도 제 3, 4, 5 유형의 거래에서 그 거래의 특성을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해외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나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그 나라 통화로의 거래인 8-1 유형의 거래만을 다루기로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서 그 나라 거주자로부터 그 나라 통화표시로 예금을 받고 또한 대출을 한다면 이는 진정한 법세계소매금융이 될 것이며 또한 은행이 현지토착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 거주자들이 왜 자기나라 은행들을 두고 우리나라 은행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인가의 질문에 부딪히면 이 유형의 거래의 전망이 얼마나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지점도 우리나라 은행들로부터 이만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의 거주자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간헐적이고 예외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선진국의 은행들도 해외에서 그 나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업무에서만은 그 나라의 현지은행들과 경쟁하기 힘들어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유형의 거래가 얼마나 험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1 유형거래에 대해 이렇게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유일한 탐출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다. 해외교포들 중에는 아직 진출국의 언어나 금융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교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소매금융업무를 하는 것이다. 물론 교포시장은 개인고객일 수도 있고 교포상사일 수도 있다. 교포상사인 경우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이들에 대한 대출은 무역거래가 기복이 심한 만큼 부실위험이 큰 대출이기도 하다. 교포이든 교포상사이든 간에 현지에서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작고 신용도가 낮을 때에는 우리나라 은행들

과 거래를 하나 현지에서 기반이 잡히면 우리나라 은행들로부터 이단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일본에 있는 교포들의 경우 일본기업들에 대한 대출수요가 줄어 자금에 여유가 생긴 일본계 은행들이 과거에는 거래를 기피하던 우리나라 교포들을 찬 이자율로 유치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제 4 절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 특징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을 미국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 및 일본계 은행기관의 국제화 과정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계 은행들이 자국의 통화를 국제거래의 표시통화로서 그 위치가 확립된 상태에서 국제화를 이루하였고, 일본계 은행들이 교환성을 전제로 국제화가 이루어졌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은 원화가 국제거래의 표시통화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교환성마저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국제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제업무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계 은행들은 환위험에 대해 헛지 할 인센티브가 없고, 일본계 은행들은 선물이나 기타의 수단으로 헛지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무런 방법도 지니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는 외환은행이 1967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사무소망을 인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Davis의 국제화 과정에서 제 2 단계가 생략된 채 제 3 단계의 해외자금의 조달을 위한 역할과 제 4 단계의 해외교포 상대의 소매금융 중심으로 국제화가 이루어졌다.

세째, 초기에는 외환전문은행인 외환은행이 해외진출을 독점하였으나 1977년부터 그 비중이 낮아졌으며 특히 1990년 1월을 기하여 외환은행이 특수은행으로부터 일반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네째, 일반은행의 해외진출은 그 진출시점이나 진출지역에 있어서 선두은행을 따르는 Bandwagon Effect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진출시점으로는 1977년부터 1984년 사이에 몰려 있으며 진출지역으로는 New York, L.A., London, Tokyo, Hongkong에 모든 시중은행들이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Bandwagon Effect는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우선 진출시점으로는 1977년부터 몇 년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선진국 외국은행의 한국진출을 유도하던 시점이며 이에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진출시점과 진출지역이 결정되어 버린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시중은행들의 해외진출은 은행의 자체적인 진출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 결정된 것이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없이 서둘러 진출한 예도 많다.

다섯째, 은행의 해외진출에 정부가 거의 절대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하이머와 키들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할 때에는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상쇄 할 수 있는 독점적 우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국외에서 국내기업에 대해 외국계 은행보다 경쟁력이 없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국내기업들의 외화자금에 관해서는 외국계은행이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하였다.

제Ⅴ장 결 론

본고에서는 은행거래를 거래하는 장소, 고객의 거주성, 거래되는 통화를 기준으로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미국과 일본의 은행들이 어떤 유형의 거래를 통해 국제화를 추진하였는가를 살펴 본 후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8가지 유형의 거래 중 4가지 유형의 거래는 국내점에서의 국제금융거래이며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의 거래가 해외지점을 통해 수행되어지는 국제금융거래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 국내점을 통하여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은행의 국제금융업무는 기본적으로 해외지점을 통하여 수행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점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화표시금융이 80년 이후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비거주자대상으로 한 엔화금융과 외화금융도 엔화의 국제화 및 국제수지흑자의 누적에 따라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은 현재 불가능하며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화대출도 Offshore 시장이 성숙되지 않고 있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화금융은 “외화대출”이라 하여 현재 국내점포들이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 그 금액이 급성장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차관의 조기상환을 위한 한국은행 수탁자금에 의한 것일 뿐, 여타의 외화대출업무는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에게 우리나라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외화표시금융이라고 하지만 국내에서 우리나라 고객마저 외국은행에게 빼앗기면서 외국에 나아가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논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국내고객대상의 국내 “외화대출”시장에서 먼저 외국은행들의 한국지점들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은행이 대외로 진출하는 과정은 선진국의 경우, 초기단계에는 수동적인 동기가 지배하여 자국의 기업들이 국제화하여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이들의 현지금융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며 다음 단계로 주로 유로시장에서 신디케이트론 시장에 참여하여 국제대출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로 전출국 거주자와 소매금융을 하는 단계를 밟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저축이 모자라는 시점에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서 은행들의 해외진출이 기업의 해외진출보다 선행되어 일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신디케이트론을 들여올 때 여러번 참여를 하여 유로금융시장을 통한 도매금융업무에도 경험이 많으며 또한 해외에 많은 수의 해외교포들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에서 소매금융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제일 마지막 단계라는 현지국 소매금융마저도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범세계 도매금융 및 범세계소매금융에 깊이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가장 기본업무인 자국기업 해외지사의 현지금융업무는 외국계 은행에게 약 75%의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은행기관의 국제화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국기업의 현지금융업무에도 경쟁력이 없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으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국제도매은행으로서 업무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대출위험을 높이는 결과만을 초래 할 뿐이다. 해외지점의 당기순이익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극히 마진이 낮은 우리나라의 종합상사들에게 대출해 주기보다는 LBO(Leverage Buyout)나 Real Estate Loan Syndication 등에 참여하거나 Loan Purchase 등을 하여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더 나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산운용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은 그나름대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보다 더욱 이러한 업무에 익숙한 외국계 은행들이 왜 이러한 고수익율을 차지하고 낮은 이자율로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 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은행의 대출결정에도 포트폴리오이론이 적용되어 특정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나 신용도를 그나마 아는 우리나라 고객들은 외국계 은행들에게 빼앗기면서 외국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기본적으로 자국통화가 세계무역의 거래통화도 아니며 또한 교환성도 없는 후진국 출신의 Ethnic Bank로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의 지속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선 점점 잊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지금융시장을 달활하는 일이며 이는 은행들이 먼저 서비스를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자국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외국환관리법의 운용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은행들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순을 시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부록 : 은행의 해외진출 제도(형태별)

518 -

한 외 사 무 소	해 외 지 점	현 지 법 인
	<p>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p> <p>2. 부동산으로서의 외화자산운용(업 무용 부동산은 제외)</p> <p>Ⅱ. 다음의 경우에 한해 Syndicate Loan 에 참여(그렇지 않은 경우 제무부부장 관승인요)</p> <p>1. 차주가 외국인 비거주자, 국내기 업 해외지사, 현지법인 또는 거주 자일 것 (다만, 해외지사, 현지법인 또는 거 주자가 수출입 관련업무, 용역 및 해외건설 등 관련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상환기간 3년 이내에 한함)</p> <p>2. 외국환은행별 해외지점의 충차관 단 대출금액이 해외지점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현지법인 금 융기관 50% 이상 출자)의 차관단 대출 참여분은 본 한도선정에 포함, 중한금융회사인 현지법인 금융기관 의 차관단대출 참여분은 제외</p> <p>3. 대출기간이 기초기간 포함 10년이 내일 것</p> <p>4. 대출참여체원은 본점 공급자금이 아닐 것</p> <p>Ⅲ. 국민인 거주자 등에 대한 여신 —외국에 있는 국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은 전당 20만 불 이하로서 국내에 있는 동산이나</p>	<p>1. 1은 적용치 않음</p> <p>2. 현지법인 금융기관 등이 Syndicate Loan에 참여시 그 Syndicate Loan 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 은 체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대출의 경우 제무부부장관의 승인을 요</p>

해 외 사 무 소	해 외 지 첨	현 지 협
업무체한 (은행법상)	<p>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간접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 취급 —2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은행 체외 인증을 받아 취급</p> <p>—장기금용 업무기간을 10년이내(예외 15년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이상 15년이내의 경우는 금통운위가 부채액을 합적하여 정하는 법위 이내 	<p>I. 해외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점의 업무활동에 관해 다음과 보고서를 한국은행 총재 앞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기별 B/S 2. 반기별 P/L 3. 반기별 세정과목 명세서 <p>→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지점의 경영실적을 세무부·장관에게 보고</p> <p>II. 해외지점의 장은 당해 지점이 취급한 예산에 양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보고.</p> <p>→ 한국은행 총재는 당해 해외지점에 대한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p> <p>III.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점이 Syndicate Loan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세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p>
사후관리 및 업무보고 (외국환관 리 규정상)	<p>I. 외국환은행은 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상황을 반기별로 한국은행 총재 앞 보고</p> <p>→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세무부·장관에게 보고</p> <p>해 당사 한 없 음</p>	<p>I. 해외지점의 장은 해외지점과 동일</p> <p>III.</p>

해 외 사무소		해 외 지점		현지 법인	
업무점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은 외국환관리법 제32조, 외국환관리규정 제18~6조에 근거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에 대한 감시권을 제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환율 원칙으로 하고 은행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실시	차	등	(다만, 현지법규에 저촉되자 아니하는 법규내)	동
금지업무 (은행법 제27조 제 1항)	해 당 사 항 없 음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2. 자기차본 조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3. 투기목적 대출 4. 정치자금 대출 등	1. 해외자본과 동일 2. 3. 4.		

자료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환경변화와 은행 경영전략」, 1989. 12.

참 고 문 헌

I. 한국 문헌

1. 서 적

1. 대한상공회의소, 「주한 외국금융기관의 경영분석」, 1986. 11.
2. 이찬구, 「국제금융론」, 에코노미아, 1984.
3. 전국은행 연합회, *Internationalization of Banking*, 1986.
4.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환경변화와 은행경영전략」, 1989. 12.

2. 논 문

1. 김인철, “한국 금융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한국금융학회, 1990. 6.
2. 부산은행, “우리나라의 금융국제화 현황과 추진방향”, 부은조사, 1989. 7.
3. 어윤대, “금융기관의 국제화”, 산정연구, 1988. 11.
4. 이경제, “금융국제화의 배경과 전망”, 금융경제, 1989. 3.
5. 최생립, “주한 외국금융기관의 경영분석”, 대한상의, 1986.
6. 한국외환은행,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화현황과 추진방향”, 외환은행월보, 1989. 2.
7. 한국은행,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화 현황과 추진방향”, 조사통계월보, 1989. 2.
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국제화 현황과 추진방향”, 조사통계월보, 1988. 6.
9. 한국은행, “주요국에서의 금융국제화의 배경과 진전방향”, 조사통계월보, 1985. 2.

II. 외국 문헌

1. 서 적

1. Donaldson, T.H., *Lending in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ing*, Halsted Press, 1979.
2. Eiteman & Stonehill, *Multinational Business Finance*, 5th ed., 1989.
3. Gray & Wheble, *Modern Merchant Banking*, Woodhead Faulker, Cambridge, 1983.
4. Khoury, Sarkis J., *Dynamics of International Banking*, Preager Publishers, 1980.
5. Park, Y.S., and Zwick, J., *International Banking in Theory and Practice*,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85.
6. Steven I. Davis, *The Management Function in International Banking*, N.Y. John Wiley & Sons, 1979.

2. 논 문

1. Aliber, R.Z.,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Banking",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Economic Review*, 1976.
2. Dufey & Ian H. Giddy, "Innovation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1985.
3. Gray & Gray, "The Multinational Bank a Financial MNC?",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981.
4. Grubel, H.G., "A Theory of Multinational Banking", *Banca Nazional del Lavoro Quarterly Review*, 1977.
5. Steven I. Davis, "Where can Tomorrow's Profits be Earned?", *The Banker*, 1982.
6. Tschoegl, A.E. "International Retail Banking as a Strategy: an Assessmsnt", *JIBS*, Summer 1987.
7. Tschoegl, A.E., "Concentration among International Bank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982. 6.
9. 寺西 重郎, "일본의 자본수출국화와 은행 국제화."
8. 石見 徹, "일본은행의 국제업무 : 금성장의 제요인."